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0년 11월호

### 1. 법률

가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2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
나. K-OTC 시장 운영규정

다.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

라.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

마.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

바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

## 1. 법률

가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감사인 직권 지정제도 정비 등)

### 1. 법률\*

#### 가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0/10/13 개정 · 시행)

##### 1) 개정 이유

□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 정비 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함

##### 2) 주요 내용

□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 정비(제5조)

- (기존)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
  - 자산 120억원 미만, 부채 70억원 미만, 매출액 100억원 미만, 종업원수 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으로 규정되어 있었음
- (개정)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,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개정
  - 자산 120억원 이상, 부채 70억원 이상, 매출액 100억원 이상, 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으로 개정

□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(제14조 제1항, 제2항 삭제)

- (기존) 외부감사법이 개정(2018.11.)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 도입
  - 상장회사로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(= 영업이익/이자비용)이 1미만인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
- 이와 관련,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되는 부분이 있었음
  - 상장회사로 직전연도 부채비율 200%초과,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.5배 초과,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
  -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
- (개정)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□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(제23조)

- (기존)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,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(기업과 회계법인)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
  - 총 15명(회사측 5명,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,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)으로 구성 → 별도의 근거 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(개정)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
  - 재적위원 2/3 이상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## 2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현황 관련 내용 개정)
- 나. K-OTC 시장 운영규정 (클라우드펀딩기업 매출액 특례 신설 등)
- 다. 특정금선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(신탁재산 자전거래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 추가)
- 라.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(시장금리 등을 통한 대출 기준금리 산정 등)
- 마.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
(벤처기업·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면책 대상 업무 및 요건 등)
- 바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(법령과 상충되는 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부분 전체 삭제)

## 2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###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0/10/5 개정·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(2020.9.2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-39호)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현황과 관련된 변경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현황(제4-72조 삭제)
  - 펀드판매사의 금감원·금투협회에 대한 이종보고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현황의 보고대상이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
- 관련 규정 개정
 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(2020/10/5 개정·시행) 제24조 삭제

### 나. K-OTC 시장 운영규정 (2020/10/20 개정·2020/10/2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(클라우드펀딩기업) 매출액 요건 특례 신설 및 K-OTC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, 관계 법률의 정식 약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클라우드펀딩기업 매출액 특례 신설(제5조 제2호 단서 신설, 제9조 제4호, 제53조 제2호)

- (현황) 창업·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활발한 자금유입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에 대한 원활한 중간회수수단 확보가 중요
  - 창업·중소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지원을 위해 온라인소액증권발행(클라우드펀딩) 제도를 운영 중
  -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발한 K-OTC 시장을 중간회수 수단으로 고려 가능하나, 진입요건으로서 매출액 5억원 이상을 적용
  - 창업·중소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펀딩기업의 K-OTC시장활용도 제고 필요

#### 〈K-OTC시장 진입요건〉

(주식유통요건) 통일규격증권 발행(또는 전자증권 등록),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,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 없을 것

(재무요건) 매출액 5억원 이상, 완전자본잠식 아닐 것, 감사의견 적정

(기타요건) 영업정지, 합병 등 등록해제 주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

- (문제점) 클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 니즈는 많으나, 일반투자자가 선호하는 거래방식(HTS, MTS)의 회수수단 부재로 원활한 자금조달에도 부정적 영향
  - K-OTC시장 매출액 요건(5억원 이상)은 클라우드펀딩기업 평균 매출액(약 3억원) 대비 높은 수준
  - 일반투자자들은 장외 사설수단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과 피해 등에 노출 우려
  - 부정확한 가격 유포, 장외브로커 불법행위, 결제불이행 리스크 노출, 세금탈루 등
- (개정) 클라우드펀딩기업의 K-OTC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펀딩금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
  - 매출액 (기존) 5억원 이상 → (개정) 3억원 이상으로 요건 완화
  - 다만,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(클라우드펀딩중개업자)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한함

### □ 클라우드펀딩기업 특례 관련 신규등록 제출서류 신설(제6조)

- 클라우드펀딩기업 특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서 클라우드펀딩금액 확인 서류 및 클라우드펀딩중개업자 추천서 신설

## □ 관련 규정 개정

— K-OTC 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0/10/20 개정 · 2020/10/21 시행)

- K-OTC시장 운영규정 상 클라우드펀딩기업 매출액 요건 특례 신설에 따른 관련 제출서류 신설(제2조, 제12조)
- K-OTC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문정비(제3조의2, 제3조의3, 제9조의2)
-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따라 투자자들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(제11조)  
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2(2016.2.17 시행)

## 다. 특정금선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(2020/10/14 개정 ·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투자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(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0-39호)을 동 모범규준에 반영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#### □ 신탁재산 자전거래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 추가(모범규준 14)

- (기존) 신탁재산의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,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
  - 자전거래란, 신탁업자가 운영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
- (개정) 매도 · 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 모두가 서면, 전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도 자전거래 가능

## 라.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(2020/10/21 개정 · 2020/11/23 시행)<sup>1)</sup>

### 1) 개정 이유

- 시장금리 등을 통한 대출 기준금리를 산정하고, 대출금리 산정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함

1) 증권담보유자의 모범규준 적용범위 확대는 2021년 1월 1일 시행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시장금리 등을 통한 대출 기준금리 산정(제3조)

- 조달금리 대신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통하여 대출기준금리를 산정토록 하여 시장금리 등과의 연계성 제고
  - 회사의 조달금리는 가산금리 항목 중 리스크프리미엄을 통하여 대출금리에 반영

#### 〈용어 정의〉

- ▷ (대출 기준금리)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, CP, RP, 전자단기사채, 금융채, 통안채, 국고채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, 코픽스 등의 지표금리
- ▷ (가산금리) 리스크프리미엄, 유동성프리미엄, 신용프리미엄, 자본비용,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, 목표이익률,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
- ▷ (리스크프리미엄)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
- ▷ (신용프리미엄) 차주의 신용상황,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, 담보비율,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
- ▷ (자본비용)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
- ▷ (업무원가 등 제반비용) 회사의 인건비, 전산비, 판매관리비 등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직·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
- ▷ (목표이익률) 회사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이익률
- ▷ (가감조정 전결금리)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할인 또는 가산한 대출금리

### □ 대출금리 산정의 적시성 제고(제4조, 제5조, 제12조, 제13조)

- (대출 기준금리) 매월 대출 기준금리를 재산정
- (리스크프리미엄) 매월 재산정하되,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의 완화 가능
- (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)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주기 완화 가능
- (자본비용,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, 목표이익률)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, 근거가 명확한 경우 재산정할 수 있음

### □ 대출금리 정보제공 확대(제16조, 제17조)

- (고지)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
- (공시)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전월 대비 변동사항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회에 매월 보고

□ 모범규준 적용범위 확대(제2조)

-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용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 적용
  - 증권담보용자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

## 마.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(2020/10/21 제정 · 2021/1/1 시행)

### 1) 제정 이유

□ 금융위 ‘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’(2020.4.7)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에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내부징계 면책제도 도입

-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내부징계를 면제하여 적극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□ 면책 대상 업무 및 요건(제3조~제5조)

- (대상 업무) 벤처기업 ·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및 혁신금융서비스 등(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27조의2 준용)
  - 신기술사업자란, 기술을 개발 ·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  - 혁신금융서비스란,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방식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
- (면책 요건)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징계 면제(제4조)
  -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
    - ※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,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(제5조)
  -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 · 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
  - 대주주 ·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에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  - 금융기관 ·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

□ 면책처리 절차(제6조~제7조)

- 당사자가 직접 면책을 신청하거나 감사부서가 면책요건 해당 여부를 자체 판단
-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
  - (위원구성) 위원수는 총 6인으로 하며, 회사 임원 5인 및 외부위원(사외이사 등) 1인으로 구성
    - ※ 과반수의 출석(단, 외부위원 1인 포함)으로 개최

- (심의대상) 감사담당부서에서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, 기타 법률적 판단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심의
  - ※ 감사담당부서에서 형식적 요건 불비로 각하하거나,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(인용)하는 경우 심의 배제
- (외부위원 운영기준) 사고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, 감사부서의 징계 초안이 경미한 수준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만으로 회의 운영 가능
  - ※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금융사고 보고기준(3억) 미만인 경우
  - ※ 회의에 참여하는 내부위원 수는 최소 3인 이상일 것

□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처리(제8조)

- 인사(징계)위원회에 부의하고, 인사(징계)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

□ 면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대상(제9조)

- 자산 5조 초과인 경우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조항(제7조) 적용
- 자산 5조 이하인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면책여부도 판단

### 3) 관련법 개정

□ 신용거래설명서(2020/10/22 개정·2020/11/23 시행)

- (신용거래이자율 산정기준 명확화) 신용거래용자(대출)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거래설명서에 구분표시
  - (기존) 연 00 %
  - (개정) 연 00 % (기준금리 00 + 가산금리 00)

□ 신용거래용자 핵심설명서(2020/10/22 개정·2020/11/23)

- (신용거래이자율 산정기준 명확화) 신용거래용자(대출)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거래설명서에 구분표시
  - (기존) 연 00 %
  - (개정) 연 00 % (기준금리 00 + 가산금리 00)

### 바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(2020/10/1 개정·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펀드 기준가격 컷오프 제도 도입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이 개정되어 해외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자산에 대한 가격 평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법령과 상충되는 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부분 전체 삭제

-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 해외 증권 및 해외 파생상품에 대해 전일 종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 삭제
  - (기존) 한국시간 17:30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로 평가하며, 19시를 기준으로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을 당일 반영
  - (개정)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 해외 증권 및 해외 파생상품에 대해 전일 최종 시가(종가)를 사용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